2017년도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시 2017년 12월 7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김 민 호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운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차 현 진 금융결제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병 희 공보관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41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3항 및 제64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적격담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즉 MBS를 포함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에 대해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들은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MBS의 담보증권 인정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담보증권인정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나면 동 부담이 해소되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채 등에 비해 MBS의 유통성이 낮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유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 5월에서 7월중 발행된 안심전환대출 관련 MBS의 경우 평균 듀레이션을 감안할 때 2018년 말이 되면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MBS 보유부담이 2018년 말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 담보증권 인정기한을 1년 더 연장하되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한도는 현행 30% 보다 낮은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이 같이 한도를 낮출 경 우 한국은행이 2018년 말에는 담보인정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장에 시사할 수 있고 은행도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담보증권 인정한도를 낮출 경우 일부 은행이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담보의 일부를 다른 증권으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MBS의 담보증권 인정한도를 현재와 같은 3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위원들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증권 인정한도를 현행 30%로 유지하되 내년에는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보도 자료에 기술함으로써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의하면 한국은행 대출의 담보증권을 정부채, 정부보증채 및 한국은행 채무증권 이외에 여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증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담보증권 범위 설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을 경우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답변하면서, 앞으로 그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첨언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 여신업무는 공개시장운영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정체성업무로서 이 업무수행에 있어 핵심 사안은 적격담보의 범위와 대출조건의 설정이며 관련 재량권의 부여는 널리 인정되는 영·미 중앙은행 제도의 시작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적격담보 범위 설정에 관한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바 있으나 동 재량권의 운영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전 한시조치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재량결정을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린 바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의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 인정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음.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적격담보범위 설정 재량권은 기본적으로 적격담보 설정의 원칙과 지침을 마련·공표하고이에 입각하여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선상에서 동 MBS를 한국은행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했던 조치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로서 수용되었다고보이며, 또 다시 이를 연장할 경우 적격담보범위 설정 재량권의 행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다만, 신인석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

<의안 제42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1) 금융결제국장이「한국은행법」제28조 제10항 및 제81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차액결제 이행 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적격담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포함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동 안건이 앞선 의안 제41호「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 정(안)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같은 취지로 규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다만, 신인석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생략)